

2023학년도 2학기

# 강사 및 겸임교원 공개 채용 계획(1차)

## 1. 초빙분야(학과) 및 인원

- 초빙분야: 불임참조

## 2. 접수기간 및 방법

- 강사 채용

- 접수기간

- 인터넷접수: 2023.06.27.(화) ~ 2023.07.02.(일) 17:00까지
- 인터넷주소: <http://recruit.dit.ac.kr/>
- 증빙서류 우편접수: 2023.07.03.(월)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- 접수방법: 인터넷 지원 접수 후 증빙서류 우편(등기) 또는 방문(학과사무실) 제출

- 겸임교원 채용

- 접수기간: 금번 회차 모집인원 없음

- 접수방법: 겸임교원은 소정양식 작성 후 출력하여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

\* 방문접수 시 학과사무실로 접수(인터넷 접수 없음)

- 접수처: 472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동의과학대학교 (해당학과 사무실)

\* 반드시 봉투 곁면에 학과, 과목명 및 지원자 성명 기재

\*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

## 3. 지원자격

- 강사 채용 지원 자격

-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
  -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
 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이 없는 자

라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

구분	대학졸업자, 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, 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강사	1년	1년	2년	1년	2년	3년

※ 비고 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## 2. 겸임교원 채용 지원 자격

- 가.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
- 나.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
- 다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
  - 전문학사는 경력 7년 이상, 학사는 경력 4년 이상, 석사 이상은 경력 2년 이상
- 라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이 없는 자
- 마. 현 근무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으며, 유사경력 포함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(※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이 학과(계열)와 유사성이 인정 되어야 함)
- 바. 교과목이 현 근무 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사람
- 사. 담당과목이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현장의 실무경험을 필요로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(순수 학술 이론은 제외)

## 4. 계약조건

1. 겸임교원: 겸임교원임용규정에 따름
2. 강사: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간 재계약 임용 절차를 보장(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)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사무실로 문의

## 5. 제출서류

### 1. 강사 채용 제출 서류

- 가. 강사 신규 채용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[소정양식-웹으로 입력]
- 나. 학력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[전문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해당 학위 모두 제출]
- 다. 산업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[해당자에 한함]
- 라. 그 외 산업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[아래 참조]
- 마. 관련 자격 및 면허증 각 1부 [해당자에 한함]
- 바. 관련 연구실적물 일체(논문 및 저서 등) 및 수상실적

(논문은 표지와 목차, 초록부분을 복사하여 제출, 필요시 원본 제출 할 수 있음)

- 사.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[소정양식-출력 후 제출]
- 아. 개인정보 수집,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[소정양식-웹으로 입력]
- 자.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빙서류

## 2. 겸임교원 채용 제출 서류

- 가. 겸임교원 이력서 1부. [소정양식-출력 후 제출]
- 나. 겸임교원임용동의서(재직기관장 날인) 1부 [소정양식-출력 후 제출]
- 다. 학력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[전문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해당 학위 모두 제출]
- 라. 재직 및 경력증명서(지원서상의 모든 경력)
- 마. 그 외 산업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바.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. [소정양식-출력 후 제출]
- 사. 개인정보 수집,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[소정양식-출력 후 제출]
- 아.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증빙서류

## 3. 공통사항(강사, 겸임교원)

- 가. 제출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- 나.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(3개월 이내 발급분)을 제출하며, 증빙서류 미 제출 시 불인정

※ 상기 산업체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택 1하여 반드시 제출

1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직장 건강보험)
 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또는 해당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
2. 4대보험 가입증명서
  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
3. 소득금액 증명서
  -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흠텍스 온라인 발급
4.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(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)
  -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흠텍스 온라인 발급

## 6. 심사기준

1. 우리 대학의 겸임교원 및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내규에 따름(겸임교원임용규정, 강사인사규정, 강사신규임용세칙)에 따름
2.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 등 3단계로 진행하며,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함
3. 채용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집 단위별로 심사항목을 추가하거나 실기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

## 7. 지원자 유의사항

- 가. 제출서류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- 나.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
- 다. 제출 서류의 허위 및 착오 기재,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전형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
- 라. 최종 합격 통지(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및 문자 통보)후 5일간 연락 두절이나 제출기한 내 임용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,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(임용 포기 통보자 포함)
- 마.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바. 해당 전공분야에 적격한 사람이 없으면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
- 사. 임용 이후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 교과목 및 강의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
- 아. 공고된 과목외 학교와 협의하여 계절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
- 자. 수강신청자의 저조로 우리 대학교 기준에 따라 과목이 폐강될 경우, 강의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음
- 차. 영어가 아닌 외국증명은 번역물을 본인이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함
- 카.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
- 타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함

## ■ 채용절차법 관련 유의사항

###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#### 제11조

-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.
-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### 유의사항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, 온라인 접수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\* 제출서류 반환(파기 확인)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채용공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, 이후 파기 처리합니다.
-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부(051-860-3021)으로 문의바랍니다.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첨부 파일로 작성
- 기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문의처 : 동의과학대학교 총무부(☎ 051-860-3021)

\*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및 채용서류 반환(파기) 확인서 양식은 동의과학대학교 총무부(051-860-3021)로 문의

\* 해당양식은 채용 종료 후 파기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가 필요시 사용하는 양식임